

공 고

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9-958호

강북7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(안) 주민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81(2014.3.6.)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, 제2015-160(2015.6.11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된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람·공고합니다.
2.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9년 8월 30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19.8.30. ~ 2019.9.30.(31일간)

나. 공람의견 제출 장소: 강북구청 도시계획과(본관 6층, ☎901-6853)

다. 공람·공고 내용

- 1) 정비사업 명칭: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2) 해제되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해제	강북7재정비촉진구역	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0-5 일대	11,526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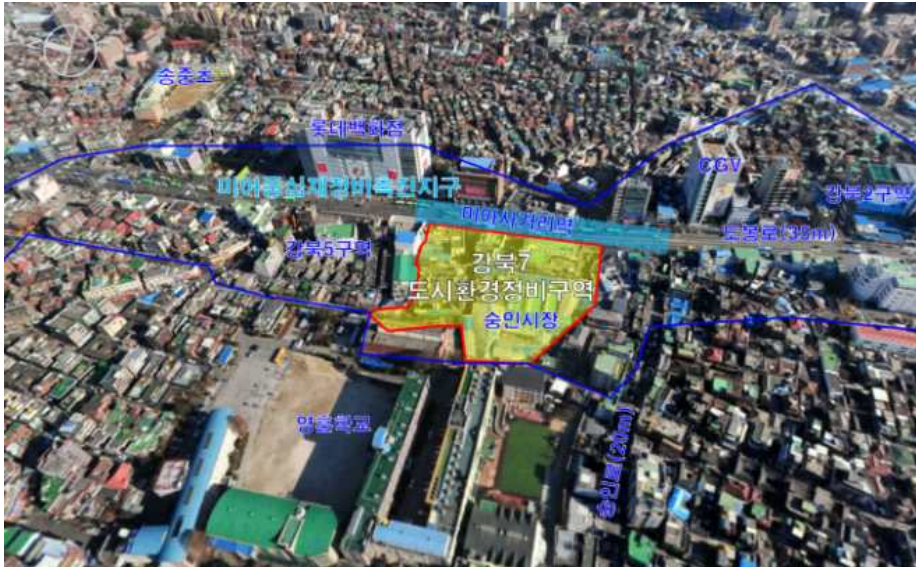
3) 정비구역 해제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

-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
4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: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이행

라. 관계서류: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□ 위치도



□ 정비구역결정도(해제)

